

이천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제정 2020. 7. 24 훈령 제29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할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및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발시험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서 말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선발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에서 말하는 공모직위에 임용할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 및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시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시험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⑤ 시험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시험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선발하

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시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다만, 공모직위의 경우 심사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 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시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최초 회의 소집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무처리) ① 시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선발시험 절차)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적격성 심사를 한다.

제9조(형식요건 심사) ① 간사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형식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처리 한다.

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

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
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제10조(적격성 심사) ①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 등에 대한 해당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1. 서류심사는 제출 또는 수집된 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 등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2. 면접시험은 능력요건 등에 대한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등을 실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능력요건 등 평가요소별 배점비중, 필기·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 등의 의무) ① 위원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까지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시험 관리를 방해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등은 회의 과정이나 선발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 또는 심사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천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이천시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모직위인 ○○○○○ 임용 선발시험(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험(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 까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시험(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 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심사)위원 회피를 신청하겠습니다.
4. 그 밖에 공정한 시험(심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제8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위반사실은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심사위원 위촉(임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이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